

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

의안번호	제572호
의결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의년월일 : 2010. 3. 4.

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 확보
- 각종 포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각종 포상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으로 포상업무의 내실화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포상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다.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라.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마.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바. 포상통제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제정조례안 : 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사전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 의회 포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(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.)과 기관·단체에 행한다.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(패), 상장, 감사장(패)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표창장·패) 표창장(패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
2.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
3.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
4.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

제6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예술·학술·체육 등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, 전시회,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2.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
제7조(감사장·패) 감사장(패)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,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·단체에 수여한다.

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
따르며 상금이나 물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대상자 추천)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대상자의 각급 기관장,
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,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한다. 단, 제6조의
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한다.

② 제5조에 의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와
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표창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적심사)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
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 및 감사장(패)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
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
위하여 의회에 「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인,
의회 사무국장 등 5인으로 구성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의정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직무를 수행한다.

⑤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공적심사
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 시기) 포상은 포상 일자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.

제13조(포상 통제 등) 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·단체 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한다. 다만, 제6조의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
2.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4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상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세부사항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표 창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표 창 문)

년 월 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(직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상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상 문)

년 월 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(직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감 사 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(직인)

[별지 제4호서식]

공 적 조 서

(1) 성 명	(漢 子)													
(2) 주 민 등록번호							-	(3) 군번 (군인의 경우)						
(4) 본 적					기 재 생 략									
(5) 주 소														
(6) 직 업				(7) 소 속										
(8) 직 위				(9) 등 급 (직급, 계급)				(10) 근무기간						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			(12) 공적 분야코드										
(13) 추천훈격				(14) 추천순위										
조 사 자														
(15) 소 속				(16) 직 위										
(17) 직 급				(18) 성 명				(인)						
<p>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천자 직 위 성 명 (직인)</p>														

주요 학 력 및 경 력

(19)년월일

(20) 학 력

(21)년월일

(22) 경 력

과거 포상기록 (훈장. 포상. 표창별로 기록)

(23)년월일

(24) 내 용

(25)년월일

(26) 내 용

(27) 공 적 사 항

공 적 조 서 (을)

공 적 사 항

[별지 제5호서식]

확 인 서

성 명	
생년월일	
주 소	
포상구분	

상기 인은 「부천시의회 포상 조례」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※ 동 조례 제13조 제3항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
2.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
년 월 일

확 인 자

(직인)

[별지 제6호서식]

공 적 심 사 의 결 서

심사개요

1. 일 시 :
2. 장 소 :
3. 안 건 :
4. 심사대상 인원 :
5. 공적심사 조서 : 별첨

주문사항 :

심사결과 :

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.

년 월 일

구 분	직 위	성 명	서 명	비 고
위 원 장	부 의 장			
부위원장	의 원			
위 원	”			
위 원	”			
위 원	사 무 국 장			

붙임 : 공적조서

부 천 시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

